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6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는 등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지원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원대책 내용으로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, 소득창출 사업의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, 소득창출 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게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고용 추천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.

이에,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공주택사업처럼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,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6. ~ 8. 18.)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게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의 고용 추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이주대책 등) ① (생략)	제35조(이주대책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	③ (현행과 같음)
1.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업전환을 희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의 실시	1. ~ 2. (현행과 같음)
2.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	
<u><신 설></u>	3. <u>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게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의 고용 추천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663